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검사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. 8. 17. 선고 2017노1537 판결
판 결 선 고 2017. 11. 14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없다.

원심은,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

